

신통일한국국민연합원로회

주소: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19 5층 / 전화:02-702-3903/ fax:02-585-6711/ 사무국장: 고기훈

문서번호 : 국민연합원로회 제12-134	선 결			지 시	
시행일자 : 2023.6.23	접	일자 시간		결 재	
수 신 :	수	번호			
참 조 :	처 리 과				
	담 당 자				

제 목 : 단체의 정관 준비에 관한 안내 및 조직개편

1. 신통일한국국민연합원로회(이하 국민연합원로회)는 공문 《원로회 12-131》, 《국민연합원로회 제12-133》에 각각 근거하여 조직을 편제한다.
2. 국민연합원로회는 본부(회장 박노희)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시도지회와 1개 천원특별지회를 구성한다.
3. 본 회는 창립정관(2022.1.13.)을 근거로 운영되며, 18개 시도지회 및 1개 특별지회는 본부가 제공한 정관을 기준으로 시도단위 조직 구성 및 현장 정책을 실행한다.

- 아 래 -

가. 단체정관 준비에 관한 안내

- 2022년 1월 국민연합원로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창립정관을 의결하였으며, 《원로회 12-131》공문 이후 본회는 본부와 시도지회를 새롭게 구성한다.
- 본회는 2023년 7월중, 창립정관 제8장 제35조(정관변경)의거하여 총회를 통해 수정된 형태의 단체정관을 준비한다.
- 그러므로, 《원로회 12-131》공문 이전 광역시도단위 그리고 광역시도단위 관리·감독을 받는 시·군·구단위에서 작성된 일체의 규칙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.

나. 조직개편

- 기존 해양지회는 해양·제주지회(시도회장 위성재)로 개편한다.
- 해양·제주지회 본부는 전남 여수시를 그 근거지로 한다.
- 단, 제주지회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적 활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한다. ‘제한적’이라 함은 제주지회 활동의 독립성과 독자성은 인정하되, 다만 제주지회의 조직 구성 및 임원선발과 해임·활동계획 및 보고·CMS수입 및 지출 등 조직·정책·예산에 관한

일차적인 관리·감독 권한은 국민연합원로회 해양·제주지회 본부에 지휘권이 귀속된다는 의미이다.

○ 따라서 제주지회가 《원로회 12-131》공문 이전 마련한 자치적인 활동은, 본 회의 창립정관 제8장 제36조(규칙제정)을 근거로 볼 적에 ‘제주지회 활성화를 위한 규칙’의 범주로서 국민연합원로회 단체정관의 하위 항목임을 명시한다.

○ 이에 제주지회는 해양·제주지회에 소속 된 시군구 지회로서의 독자적 활동성이 인정되는 바, 이후 제주지회의 일체 활동은 해양·제주지회 본부의 주관하에서만 인정되며 제주지회 시군구 회장단에 대한 인사권도 해양·제주지회 본부에 있다.

소 속	개 편 이 전	개 편 이 후	개 편 일 자
시도지회	해양지회	해양·제주지회	2023.6.23

“끝”

신통일한국국민연합원로회 회장 박노희

